청년취업지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취업지원]

2030 취업준비생이라면 주목!
이 콘텐츠에서는 청년 미취업자가 취업을 준비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지원 정부정책(직업능력개발, 금융생활, 주거지원, 복지증진 등)을 소개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취업 후 초기지원제도 등 청년 취업에 관련된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취업지원 1
1. 저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4
1.1. 취업지원 대상 4
1.1.1.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몇 살인가요? 4
1.2. 취업지원 대상기업 7
1.2.1.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7
2. 취업준비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9
2.1. 취업준비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9
2.1.1. 적성검사, 상담 및 일 경험 지원 9
2.1.2. 자격증 대비를 위한 강의 지원 12
2.1.3.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지원 14
2.2. 생활비, 주거비, 대출이자가 부담돼요. 17
2.2.1. 구직활동지원금 및 청년수당 17
2.2.2. 청년 공공임대 주택 및 월세 지원 21
2.2.3. 신용회복 및 (학자금)대출 지원 24
2.3.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27
2.3.1. 무료 건강검진 및 운동프로그램 지원 27
2.3.2. 심리상담, 단기집단상담 지원 29
3. 취업 후에는 꼭 확인하세요! 33
3.1. 취업 후 각종 혜택을 확인하세요. 33
3.1.1. 취업성공수당 및 세액 공제 33
3.2. 일을 더 잘하고 싶어요. 34
3.2.1. 근로자를 위한 교육 지원 34
3.3.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37
3.3.1.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37

1. 저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1. 취업지원 대상

1.1.1.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몇 살인가요?

우리나라의 법은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청년기본법」 제17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청년기본법」 제19조).

「고용정책 기본법」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지원

▪ 국가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제1항 참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지원

▪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제1항).

각 지원제도별 “청년”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

▪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참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청년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과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 참조).

▪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외에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단서 참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의 청년

▪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의2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청년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청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참조).

▪ 다만,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각 지역 조례별 “청년”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	청년의 기준
서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경기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부산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
인천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대구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대전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광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울산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세종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강원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충북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충남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전북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전남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경북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경남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제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 참조]

※ 본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청년취업지원 관련 정보는 제도별, 운영 지자체별로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이 아니라면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나요?

대상	콘텐츠
청소년	『근로청소년』
장애인	『장애인 취업·창업』
고령자	『고령자 일자리』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취업』

1.2. 취업지원 대상기업

1.2.1.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공공기관,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지원합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본문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단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 구조조정
-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 박사학위 취득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및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채용 응시 자격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규정한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개정)].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제1항).

▪ 정부는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제2항).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1항).

▪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2항).

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란?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란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 임금 등 보수,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교육훈련, 혁신역량 등 7여개의 지표를 심사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우수기업을 말합니다[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홈페이지(https://kangso.kova.or.kr/), 사업소개—선정사업 소개].

▪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의 인식개선 및 우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해 왔으며, 202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청년고용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까지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홈페이지(https://kangso.kova.or.kr/), 사업소개—선정사업 소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기준

▪ 1차로 다음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효기간 중이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홈페이지(https://kangso.kova.or.kr/), 사업소개—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대표자 포함)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대표자 포함)
- 공고일 기준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
- 신용평가등급 BB-미만 기업(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소비·향락업 등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 임금 등 보수,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교육훈련, 혁신역량 등에서 서면심사를 거친 후 신청기업 현장실사를 통해 사실여부 확인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홈페이지(https://kangso.kova.or.kr/), 사업소개—선정기준].

>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및 선정기업 현황 등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홈페이지(https://kangso.kov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준비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2.1. 취업준비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2.1.1. 적성검사, 상담 및 일 경험 지원

나의 적성 찾기

직업심리검사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총 21여종의 심리검사를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취업가이드—직업심리검사(www.work24.go.kr)].

▪ 직업심리검사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즉시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검사 완료 직후, 검사결과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취업가이드—직업심리검사(www.work24.go.kr)].

▪ 검사결과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검사결과 상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1350)를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취업가이드—직업심리검사(www.work24.go.kr)].

> ※ 심리검사명, 검사시간 등 직업심리검사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하기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 등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란?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이란 고용노동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 학내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및 일자리 발굴·매칭 등을 지원하는 청년 특화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운영·지원대학사업 시행지침」 제4조제2호).

지원 대상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서비스 대상은 재학생, 고교생, 졸업생, 지역청년 등 취업을 희망하는 15세~34세의 대한민국 국적인 청년으로 하며, 운영대학은 자교생(자교 출신)이 아님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운영·지원대학사업 시행지침」 제14조제1항).

> Q. 저는 대학생이 아닌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고졸 미취업 청년, 타대생, 일반 취업준비청년 등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상담·특강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2021년 이전의 사업유형을 유지하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청년고용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운영·지원대학사업 시행지침」 28쪽 참조>

지원 내용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내 각종 취업지원 기능과 인프라를 공간적으로 통합·연계·일원화하여 대학·고교 재학생·졸업생 및 지역청년 등 청년에게 취업·진로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한함)을 제공합니다(「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운영·지원대학사업 시행지침」 제16조제1호).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직업 진로 탐색과 설계(저학년 중심),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훈련·일경험 연계(고학년 중심) 등 취업역량 향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운영·지원대학사업 시행지침」 제16조제2호).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AI·빅데이터 기반 진로·취업상담 서비스, 개인별 희망 직업 경력개발로드맵 제공을 위한 심층상담 및 프로그램,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운영·지원대학사업 시행지침」 제16조제3호).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미취업 졸업생 발굴 체계를 구축,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1B1 맞춤형 컨설팅, 기업 현직자 멘토링, 잡매칭, 경력초기 적응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운영·지원대학사업 시행지침」 제16조제4호).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는 미취업 청년 DB관리 및 발굴, 진로·직업탐색 및 상담, 취업지원 및 회복·진로탐색 서비스, 직무·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1:1 상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서비스 연계, 취업정보 제공, 취업 및 각종 취업지원 사업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운영·지원대학사업 시행지침」 제16조제5호).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목록을 확인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내 전문 상담사의 가까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거나 프로그램(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포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학교 검색 및 상담예약 등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 경험 해보기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제2항).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채용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청년 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사업소개 참조].

▪ 지원 대상

▹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최고 만 39세로 한정함)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청년 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자주하는질문(FAQ) 참조].

▪ 지원 내용

▹ 프로젝트형 일경험은 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과제를 4명 내외 1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프로그램으로 보통 6~8주 내외로 진행하는 유형입니다[청년 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자주하는질문(FAQ) 참조].

▹ 인턴형 일경험은 청년이 기업에 출근하여 다양한 직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일경험 기간은 기업 및 직무에 따라 4~20주 정도 진행하는 유형입니다[청년 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자주하는질문(FAQ) 참조].

▹ ESG지원형 일경험은 기업이 ESG경영 사회공헌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의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간은 기업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유형입니다[청년 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자주하는질문(FAQ) 참조].

▪ 신청 방법

▹ 청년 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에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합니다.

> ※ 운영기관 검색, 프로그램 주요내용 등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청년 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실제 기업에서 직접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원 내용

▹ 훈련연계형은 일경험 참여자에게 해당 기업의 실제 업무를 직접 처리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직무는 참여기업의 업종·직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참여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 훈련연계형 일경험은 직무수행시간과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1일 4~8시간, 1주 20~40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 체험형은 상대적으로 구직의욕이 낮은 사람이 직장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제 직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 체험형 일경험은 2개월 내 20일~30일 간 일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1일 3~4시간, 1주 15~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취업지원을 신청한 후 일경험 프로그램 필요여부를 상담·진단 받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일경험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자격증 대비를 위한 강의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 자격증 준비하세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 참조].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 계좌(카드)발급 및 사용, 수강신청, 지원한도 및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청년, 대학생 중 대학교 3학년, 구직자 등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 참조].

▪ 다만, 재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 참조].

지원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되며, 1인당 5년간 300만원(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100%를 지급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2항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 참조].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제1항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 참조].

- 계좌발급 신청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 다만,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제2항)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조회 등 국민내일배움카드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취업을 대비하세요.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이란?

▪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은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의욕강화와 자신감 회복은 물론 본인에 대한 이해와 강점 발견, 구직기술 습득 등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취업지원—청년 취업역량강화 참조].

지원 대상

▪ 34세 이하의 청년층 취업준비생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취업지원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취업지원—청년 취업역량강화 참조].

지원 내용

▪ 취업특강: 고용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50명 내외로 강의식 프로그램을 2시간 진행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취업지원—청년 취업역량강화 참조].

▪ 단기집단프로그램: 자신에게 부족한 구직기술을 주제별로 선택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25명 이내로 구성된 그룹에 단기(3~4시간)로 참여하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취업지원—청년 취업역량강화 참조].

▪ 집단상담프로그램: 12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으로 참여하여 2~5일간 다양한 실습과 체험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구직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집단상담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취업지원—청년 취업역량강화 참조].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청년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과 실시하는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한 후

일정에 맞춰 참가 신청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취업지원—청년 취업역량강화 참조].

> ※ 청년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상세 구성, 실시기관 조회 등 청년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디지털 훈련"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 취업에 도전해요.

"K-디지털 훈련"이란?

▪ "K-디지털 훈련"은 민간의 혁신훈련기관과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기반기술과, 이를 활용한 핀테크, 클라우드, 스마트제조등 응용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K-디지털 훈련 참조].

지원 대상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및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고객센터—정책/제도 참조].

지원 내용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경우 일반적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수강료 결제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고객센터—정책/제도 참조].

▪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직종 훈련과 달리,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5년) 내 1회에 한해 수강료의 90% 이상을 지원(자기부담금 최대 6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K-디지털 트레이닝은 3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훈련이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은 최대 300만원까지만 차감되며,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지원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고객센터—정책/제도 참조].

신청 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K-디지털 훈련 참조].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및 K-디지털 아카데미 훈련과정 등 K-디지털 아카데미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지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처음 준비한다면 주목하세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 이력서는 인사담당자에게 수많은 지원자 중 자신이 가장 적합한 지원자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쌓아온 능력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동안 받은 교육과 자격증, 경험과 경력 등을 정리해보고 지원 분야에 대한 역량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취업가이드—자소서 작성가이드(www.work24.go.kr)].

▪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짧게 소개한 글로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 적합한 역량과 확고한 입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고, 입사 후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취업가이드—자소서 작성가이드(www.work24.go.kr)].

>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작성 시 유의사항 등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렵다면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의 자기소개서 컨설팅

▪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에서는 전문 컨설턴트들의 첨삭 지도로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취업지원—자소서 첨삭(www.jobaba.net)].

지원 대상

▪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www.jobaba.net)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민 이외에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취업할 직무에 맞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면 48시간 이내(단, 주말 제외)에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취업지원—자소서 첨삭(www.jobaba.net)].

▪ 실제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첨삭 강사가 지도한 내용과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취업지원—자소서 첨삭(www.jobaba.net) 참조].

신청 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www.jobaba.net)에 회원가입을 한 후 자기소개서 첨삭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취업지원—자소서 첨삭(www.jobaba.net) 참조].

> ※ 자기소개서 컨설팅 지원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홈페이지(www.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 면접, 비대면 면접 준비 모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준비하기

▪ 면접 준비 시 면접관에게 호감을 주는 태도와 답변 요령, 기본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취업가이드(www.work24.go.kr)].

※ 면접 복장 무료 대여 서비스

Q. 잘 입지 않는 면접 복장을 구입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 미취업자의 면접 복장 구입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접 복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 외에도 지역별 서비스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취업날개	광주 정장대여
대구 희망옷장	고양 희망나래
수원 청나래	용인청년희망옷장
부산 드림옷장	군포 청년날개
인천 드림나래	천안 면접정장 무료대여

<출처: 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취업가이드(www.work24.go.kr) 참조>

AI 면접 준비하기

▪ “AI면접”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술로 “AI역량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AI면접(AI역량검사)”은 뇌신경과학 기반으로 사고와 행동의 패턴을 분석해 지원자의 성향과 역량이 기업 문화와 직무에 적합한지 파악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취업가이드(www.work24.go.kr)].

▪ “AI면접”은 지원자의 다양한 역량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인의 행동적 특성부터 심리적 경향성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거짓 응답을 엄격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기보고식 기법과 뇌의 전전두엽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역량 분석 게임, 면접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는 영상분석 기술은 지원자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취업가이드(www.work24.go.kr)].

화상 면접 준비하기

▪ 화상면접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장비를 통해 영상으로 지원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대일 또는 다수의 면접관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면접관은 영상을 통해 지원자의 모습을 관찰하며 지원자의 역량을 실시간으로 평가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취업가이드(www.work24.go.kr)].

※ AI 면접·화상 면접 준비 방법 및 면접 예상질문 등 면접 준비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취업가이드(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지역엔 면접수당 제도가 있어요!

< 경기도의 면접수당 지원 >

(2026년 기준)경기도 내 거주중인 1986년 1월 1일생 ~ 2008년 12월 31일생 청년에게
최대 15만원(면접 1회당 5만원, 연 최대 3회, 지역화폐 지급)으로 면접에 사용된 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진시키는 청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포털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여부가 확인되면 공지된 기간 내에 지급합니다.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 정보—경기도민 복지—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참조>

2.2. 생활비, 주거비, 대출이자가 부담돼요.

2.2.1. 구직활동지원금 및 청년수당

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의 지급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및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함)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
5.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위 1.~4.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위 5. 취업한 사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위 1. 2. 및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함)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미만인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6조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할 의사가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지급의 제한

▪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수령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4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본문).

-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이하 “구직활동지원금”이라 함)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단 참조).

- 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참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활동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구직활동지원금 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지원 대상

▪ I유형 선발형 청년층의 경우 15세 이상 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이하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세 이상 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 등을 말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지원 내용

▪ I유형의 경우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60만원(월 6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 II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https://1350.moel.go.kr) 참조>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에서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취업지원에 선발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 구직활동지원금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 사업을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제7항 전단).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금융복지—복지지원—청년수당 참조].

▪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금융복지—복지지원—청년수당 참조].

▪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에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해당) 및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을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금융복지—복지지원—청년수당 참조].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 정보—경기도민 복지—청년기본소득 참조].

▪ 신청 방법

▹ 경기도일자리포털 통합접수시스템(www.apply.jobaba.net)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 정보—경기도민 복지—청년기본소득 참조].

※ 우리 지역엔 청년활동수당 제도가 있어요!

< 부산광역시의 청년디딤돌카드 플러스>

-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진입활동비 최대 180만원(월 30만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 대전광역시의 청년내일희망카드 >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비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 광주광역시의 구직활동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

-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비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 위의 지역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이 있으므로 거주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2. 청년 공공임대 주택 및 월세 지원

※ 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청년기본법」 제20조).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확인하세요.

청년 전세임대 주택

▪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 지원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을 포함하며 혼인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택은 입주 신청 후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 해당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 1인 기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 신청 방법

▹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 지원 대상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과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및 사회초년생을 지원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 지원 내용

▹ 행복주택은 시중시세의 60~80%인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의 경우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 신청 방법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접수 기간 내에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 우리 지역엔 이런 제도가 있어요!

< 서울특별시의 청년안심주택 >

-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은 공통요건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요건을 충족한 미혼 청년으로 소유한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내이어야 하며,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에 따른 세부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방법은 공공임대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 후 청약접수를 하며, 민간임대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접수 절차에 따라 청약 접수를 합니다.

<출처: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사업소개(www.soco.seoul.go.kr) 등 참조>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 청년월세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 연장)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 지원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을 월세로 지원합니다. 다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 신청 방법

▹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서명 필수)를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 **※ 청년월세 지원사업(2026년 기준)**
>
> < 지원 내용 >
>
> -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1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 < 지원 대상 >
>
>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출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조>

2.2.3. 신용회복 및 (학자금)대출 지원

> **※ 청년 금융생활 지원**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청년기본법」 제22조제1항).

신용회복 지원으로 채무 문제는 잠시 잊고 취업 준비에 집중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특별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대학생 및 청년 미취업자의 건강한 사회 편입을 위해 개인채무를 조정하는 개인워크아웃을 지원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채무조정—채무조정 자세히 알아보기—개인워크아웃(www.ccrs.or.kr)].

▪ 지원 대상은 채권금융회사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채무조정—채무조정 자세히 알아보기—개인워크아웃(www.ccrs.or.kr)].

▪ 신청 서류는 본인확인서류(신분증), 재학증명서(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경우), 사실증명원(청년 미취업자의 경우)를 구비해야 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채무조정—채무조정 자세히 알아보기—개인워크아웃(www.ccrs.or.kr)].

▪ 신청 방법은 전화, 모바일 앱 및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를 통해 상담 및 예약할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채무조정—채무조정 자세히 알아보기—개인워크아웃(www.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1600-5500)로 문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지역엔 이런 제도가 있어요!

< 서울특별시의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약정체결에 필요한 초입금 지원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www.youth.seoul.go.kr), 금융복지—금융지원—학자금대출 신용 회복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출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금융복지—금융지원—학자금대출 신용 회복(www.youth.seoul.go.kr) 참조>

< 부산광역시의 청년 신용회복지원(희망신용상담센터)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 중인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1:1 전문재무상담, 채무조정비용·연체예방비용 지원, 맞춤형 교육**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출처: 부산청년플랫폼, 생활안정—청년 신용회복지원(희망신용상담센터) 참조(https://young.busan.go.kr)>

※ 위의 지역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이 있으므로 거주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학생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는 가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청년몽땅정보통, 금융복지—금융지원—학자금대출 이자 지원(www.youth.seoul.go.kr)].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국장학재단 대출 신청일 기준 소득구간 7분위 이하의 서울지역 대학생,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청년몽땅정보통, 금융복지—금융지원—학자금대출 이자 지원(www.youth.seoul.go.kr)].

▪ 지원 내용

▹ 학자금 대출이자(이자산정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확정된 지원 금액을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로 상환하여 실질적 상환부담을 경감합니다[청년몽땅정보통, 금융복지—금융지원—학자금대출 이자 지원(www.youth.seoul.go.kr)].

▪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금융·복지—금융지원—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1년에 2번 신청이 있으며, 신청 시기는 (상반기) 1월 중순~3월 초, (하반기) 7월 중순~9월 초입니다[청년몽땅정보통, 금융복지—금융지원—학자금대출 이자 지원(www.youth.seoul.go.kr)].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대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미취업 졸업생(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 중 소득 8분위(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명 이상)를 대상으로 합니다[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 정보—경기도민 복지—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참조]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에서 제출서류(공고문 참고)를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합니다[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 정보—경기도민 복지—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참조]

> ※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상환 안내—지자체 이자 지원(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등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 지원을 고려해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

▪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취업 준비 및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을 말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금융상품—생활안정자금—햇살론 유스(www.kinfa.or.kr) 참조].

지원 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인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재산세 납부내역을 통해 본인 소유의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금융상품—생활안정자금—햇살론 유스(www.kinfa.or.kr) 참조].

지원 내용

▪ 동일인 1인 한도 최대 1천2백만원을 1회 부여하며 학업·취업준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최대 900만원을 보증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금융상품—생활안정자금—햇살론 유스(www.kinfa.or.kr) 참조].

신청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오프라인 불가)을 통해 서류 제출 및 비대면 심사를 신청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햇살론 유스 협약은행 중 우대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원하는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금융상품—생활안정자금—햇살론 유스(www.kinfa.or.kr) 참조].

> ※ 보증 심사 신청 전에는 동 자금이 현재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며, 햇살론 유스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2.3.1. 무료 건강검진 및 운동프로그램 지원

> ※ **청년 복지증진**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청년기본법」 제21조).

청년 미취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 건강검진 지원 대상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전단).

▪ 일반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일반건강검진에 따른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항).

국가 건강검진 항목

구분	검진항목	비고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항목	이상지질혈증 검사 ※ 총콜레스테롤,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24세 이상 남성, 4년주기 * 여성은 40세 이상 해당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조기정신증	20~34세는 2년에 1회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건강모아—나의 건강—건강검진 실시안내 참조>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를 한 후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선택합니다. 검진기관 사정(예약집중 등)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및 예약 후 검진해야 합니다.

> ※ 국가 건강검진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이 사이트『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콘텐츠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제1항).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은 지역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www.mohw.go.kr)].

지원 대상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www.mohw.go.kr)].

지원 내용

3개월간 월 24만원 맞춤형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10% 부담 조건으로 제공하며, 1회에 한해 재이용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www.mohw.go.kr)].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운동 및 건강프로그램>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	1:1 주 2회 1:2 주 3회 (회당 60분) 1:3 주 3회 (회당 70분) 1:4 주 3회 (회당 90분)
부가서비스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신청 방법

▪ 시·도별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상이하므로 사업단 현황을 참조하여, 해당 사업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www.mohw.go.kr)].

※ 각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 운영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각 사업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2. 심리상담, 단기집단상담 지원

※ 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청년기본법」 제21조).

온라인 청년센터를 이용한 상담

심층(전문)상담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로 인한 불안 및 취업 스트레스 상담, 취업 지원정책, 주거 및 생활 지원정책, 진로 상담, 취업 상담 등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1:1 맞춤형 심층(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상담실—심층상담(www.youthcenter.go.kr) 참조].

▪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1회 기준 최대 50분을 제공합니다[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상담실—심층상담(www.youthcenter.go.kr)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분야, 전문 상담사, 상담예약 일정을 선택하고 상담신청 내용을 작성한 후 예약신청을 합니다[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상담실—심층상담(www.youthcenter.go.kr) 참조].

▹ 심층 상담은 당일 예약이 불가하며, 예약일자 1일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상담실—심층상담(www.youthcenter.go.kr) 참조].

찾아가는 상담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진로상담, 취업상담,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등에 대한 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상담실—찾아가는 상담(www.youthcenter.go.kr) 참조].

▪ 찾아가는 상담(신청형)의 경우 5인 이상의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으로 구성된 그룹·단체(스터디그룹, 학습동아리, 기관, 단체 등)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상담실—찾아가는 상담(www.youthcenter.go.kr) 참조].

▪ 찾아가는 상담(참여형)의 경우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이라면 누구나 1:1 대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상담실—찾아가는 상담(www.youthcenter.go.kr) 참조].

▪ 신청 방법

▹ 찾아가는 상담(신청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일정, 장소, 상담 방법을 선택하고 상담 참여 인원, 상담 분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합니다. 다만, 상담 참여 인원은 반드시 5명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상담실—찾아가는 상담(신청형)(www.youthcenter.go.kr)]

▹ 찾아가는 상담(신청형)은 최소 7일 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정, 장소, 상담 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상담실—찾아가는 상담(신청형)(www.youthcenter.go.kr)].

▹ 찾아가는 상담(참여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일정과 장소를 정해 공지하고 청년층 개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상담 진행 방법은 1:1 대면 상담입니다[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상담실—찾아가는 상담(참여형)(www.youthcenter.go.kr)].

▹ 찾아가는 상담(참여형)은 신청 후 일정, 장소, 상담 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상담실—찾아가는 상담(참여형)(www.youthcenter.go.kr)].

> ※ 청년을 위한 심층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란?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조기발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정책—건강—정신건강정책(www.mohw.go.kr) 참조].

▪ 지원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보건복지부, 정책—건강—정신건강정책(www.mohw.go.kr) 참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 지원 내용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바우처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정책—건강—정신건강정책(www.mohw.go.kr) 참조].

▪ 신청 방법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신청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청년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정책—건강—정신건강정책(www.mohw.go.kr) 참조].

※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등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란?

▪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5일 간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12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실습과 체험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구직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집단상담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청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집단상담 프로그램(www.work24.go.kr)].

▪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운영 기관의 상담 과정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청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집단상담 프로그램(www.work24.go.kr)].

※ 지역별 고용센터(실시 기관) 조회, 프로그램의 세부구성 등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취업지원—청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지역엔 이런 제도가 있어요!

< 서울특별시의 청년 마음건강 >

- 상담전문가 배정을 통해 최대 6회기(1회기에 50분) 자기이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기질

및 성격검사(TCI)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맞춤상담을 제공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지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연도 내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금융복지—건강지원—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출처: 청년몽땅정보통, 금융복지—건강지원(www.youth.seoul.go.kr) 참조>

< 경기도의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

- 경기청년 마음상담소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경기청년 마음상담소에서 상담게시판에 상담 글을 작성하면 배정된 상담사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청년 마음상담소(www.youth.gg.go.kr/gg/mindcare) 참조>

< 광주광역시의 마인드링크 >

- 마인드링크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하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자가검진,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마인드링크 홈페이지, 자가검진 및 상담—온라인상담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화(☎062-267-3120)로 상담 및 예약할 수 있습니다.

<출처: 마인드링크, 이용안내(www.mindlink.or.kr) 참조>

※위의 지역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이 있으므로 거주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 후에는 꼭 확인하세요!

3.1. 취업 후 각종 혜택을 확인하세요.

3.1.1. 취업성공수당 및 세액 공제

취업에 성공했다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세요!

"취업성공수당"이란?

▪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 또는 사후관리를 하는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지원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수급자에게는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 6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신청 방법

▪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참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취업성공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참조).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이 콘텐츠의 2-2-1. 구직활동 지원금 및 청년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성공수당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전단)

▪ 다만, 청년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세액을 감면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후단 참조)

-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함)
- 사회복무요원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후단).

▪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3.2. 일을 더 잘하고 싶어요.

3.2.1. 근로자를 위한 교육 지원

근로자도“국민내일배움카드”로 근로자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 참조].

지원 대상

▪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도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 참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 참조].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다만, 다음의 사람은 제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적용받는 사람

√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을 적용받는 사람(단, 6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경우를 말함)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

√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인 사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조건부수급자와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 원 이상인 사람[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지원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되며, 1인당 5년간 300만원(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100%를 지급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2항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 참조].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인 사람(자립준비청년)
- 한부모가족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 아프간 특별기여자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및 근로자 훈련과정 조회 등 국민내일배움카드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이 콘텐츠의 2-1-2. 자격증 대비를 위한 강의지원 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에서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직업능력개발 촉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CHAMP) 사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말합니다[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홈페이지, 사업소개—사업개요/연혁(www.hrd4u.or.kr)].

지원 내용

▪ 공동훈련센터는 주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5조).

▹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

▹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첨단산업, 산업전환 분야 등 신기술·신산업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

√ K-하이테크 플랫폼: 중소기업 재직자·구직 청년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첨단분야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시설을 개방·공유하는 기관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업전환 및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신청 방법

▪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은 공동훈련센터를 확인한 후 개별 공동훈련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 공동훈련센터 조회 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홈페이지(www.hrd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3.3.1.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대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 및 제2항).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

▪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 ※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또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처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법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 또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